

미지급 급여 청구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		처리기간		30일	
수급권자 (대표자)	성명					주민등록번호			
	전화번호(자택)					휴대전화번호			
	주소								
	전자우편주소(e-mail)								
	사망자와의 관계		동순위 수급권자	[] 단독 [] 동순위자(명)	대표자 선정여부	[] 선정 [] 미선정			
급여액 결정· 변경내역 수신 방법		[] 문서 [] 전자우편주소(e-mail) []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							
지급계좌	일반계좌		금융기관			계좌번호			
	전용계좌(압류방지용)		금융기관			계좌번호			
	※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의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. 월 급여액이 입금한 도인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
미지급 급여 내역	사망자 성명			주민등록번호			사망일		
	가입자 성명			주민등록번호			사망자와의 관 계		
	업무상 재해여 부	[] 대상 [] 비대상	재해보상금 수령여부		[] 수령 [] 미수령	※ 미지급 기간			
	제3자 가해 여 부	[] 있음 [] 없음	손해배상금 수령여부		[] 수령 [] 미수령	(개월) 년 월 ~ 년 월			
동순위 수급권자	번호	성명	주민등록번호			대표자 선정		※ 장애 표시	
						선정일자	서명 또는 인		
	①								
	②								
대리인	성명			주민등록번호					
	전화번호(자택)			휴대전화번호			수급권자와의 관계		
	주소								
	수급권자 확인 (인)				기관장 확인 (인)				

「국민연금법 시행규칙」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

청구인 제출서류	1.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(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) 2. 미지급 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(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3.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(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) 1부 4.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- 바탕색이 어두운 칸과 “※”로 표시된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.
- 수급권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, “주소”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. 전자우편 주소(e-mail)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.
- "급여액 결정·변경내역 수신방법"란에는 청구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[]에 “√”표시를 합니다.
 ※ 급여액 결정·변경내역은 「국민연금법 시행규칙」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. 이 경우 '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'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.
-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.
-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"대표자 선정"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
 가.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해야 합니다.
 나.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
- "대리인"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,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,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.
 ※ “기관장 확인”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,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.

처리절차

